

定 款

2017. 3. 10

SHINSEGAE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①본 회사는 주식회사 신세계라고 칭한다.

②영문으로는 SHINSEGAE Inc.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수출입업
- 2.백화점경영
- 3.각종물품 제조 및 도·산매업
- 4.생활필수품 판매업
- 5.식품가공 및 의류봉제 판매업
- 6.여행알선업
- 7.각종 접객 서비스업
- 8.부동산 임대·관리용역업 및 부동산개발업
- 9.건설공사의 설계감리 및 청부업
- 10.신용카드업
- 11.보세 판매업
- 12.주류 중개업
- 13.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과 용역제공업
- 14.음식점업
- 15.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
- 16.소매업 관련 용역 및 위수탁사업
- 17.스포츠·레저시설운영업, 골프장업
- 18.자동차운수업, 복합운송주선업, 물류배송센터 운영업, 창고업
- 19.교육·출판업
- 20.의료용구 판매업
- 21.각종 사설강습소, 공연장, 영화관시설 및 운영업
- 22.각종 보험대리점업
- 23.자동차 매매 및 정비사업
- 24.주차장업
- 25.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
- 26.화물자동차터미널 운영업
- 27.무점포소매업

- 28.통신판매업
- 29.전자상거래업
- 30.평생교육업, 학원업
- 31.석유판매업 및 연료소매업
- 32.발전업
- 33.다양한 형태의 가맹사업
- 34.전자금융업
- 35.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 36.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
- 37.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sega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중앙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7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②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다만, 상환우선주식의 배당의 순위는 제③항에 의해 참가적 배당이 부여된 우선주식보다 후순위로 한다.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다만,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분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일까지는 결의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 ⑦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종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본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발행 후 일정기간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서, 일시에 또는 이익의 한도내에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상환우선주식을 이사회 결의로서 발행할 수 있다.
 1. 본 회사가 발행할 상환우선주식의 수는 삼백만주로 한다.
 2. 상환우선주식의 상환가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발행가액 + 발행가액 × 상환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초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경과일수 ÷ 365 × 회사가 최근 발행한 회사채표면이자율)
 3. 상환우선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4. 상환의 방법은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한 후 상환할 뜻 및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주식을 강제 상환한다.
 5. 상환우선주식이 상환기간내에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 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6. 상환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기간동안 법령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및 전환비율은 상환우선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 8 조 (주권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

제 9 조 (신주의 인수) ①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나.관계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당하는 경우
다.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정관 제 9 조의 3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기타 법인 등에게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 2 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전 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 1 항 및 제 2 항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⑧회사는 제 2 항 마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제 9 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에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배당한다.

제 9 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①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최대주주(관계법령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관계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2.주요주주(관계법령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가.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나.당해 주식의 권면액

- 2.제 1 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 1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⑤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⑥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⑦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 9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9 조의 4(일반공모증자 등) ①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14.3.14)

제 10 조 (삭제 `92.2.28)

제 11 조 (삭제 `86.2.28)

제 12 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본 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리사무 등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부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 으로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와 등록질권 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④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경우 신고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본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본 회사는 1 월 1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②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③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한 후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 채

제 15 조 (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 ②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 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일천오백억원은 보통 주식으로, 오백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전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회의 결의로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⑥ 제 1 항 1 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 9 조 8 항 제 1 호, 제 3 호, 제 4 호의 신주배정 방식을 준용한다.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1.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오백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오백억원은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내에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⑥ 제 1 항 1 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 9 조 8 항 제 1 호, 제 3 호 제 4 호의 신주배정 방식을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7 조 (소집)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 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3 개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④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1 조 제 3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8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 사항을 총회일 2 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본 회사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9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 (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1 조 제 3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1 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사무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2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일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3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주주총회 개최전에 본 회사 소정양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일통의 위임장으로서 수개의 총회에 관한 포괄 대리권을 줄 수 있다.

제 24 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감사위원회

제 26 조 (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제 27 조 (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본 회사는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에서 2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 382 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29 조 (이사의 보선)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0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지배인 약간명씩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1 조 (이사의 직무) 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②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수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1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 조 (삭제 2000. 3. 17)

제 33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 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34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35 조 (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회의 승인이 없으면 본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수 없다. 단 경업중임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 (이사회회의 의사록) ①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6 조의 2 (위원회) ①본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 제 33 조, 제 34 조 및 제 3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7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8 조 (상담역 및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8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정관 제 36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관계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 38 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 3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38 조의 4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8 조의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①본 회사는 정관 제 36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한다.

③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제 38 조의 6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직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

제 6 장 계 산

제 39 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4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제 1항의 서류를 받은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제 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대표이사는 제 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 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삭제, 2001.3.16)
5. (삭제, 2001.3.16)
6. 임의 적립금
7.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1 조의 2 (삭제, 2012.3.2)

제 42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주주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42 조 2 (분기배당) ① 본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 월, 6 월 및 9 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결의는 제 1 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 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 7 조의 2 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43 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 7 장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관개정내용

1. 1968년 7월 20일 개정 (12 조, 14 조, 23 조, 24 조, 25 조 개정 및 30 조, 32 조 신설)
2. 1969년 2월 28일 개정 (14 조, 23 조, 25 조)
3. 1969년 8월 14일 개정 (14 조, 22 조, 23 조)
4. 1971년 4월 21일 개정 (5 조(799,900 주로))
5. 1971년 4월 29일 개정 (11 조의 2 신설)
6. 1971년 5월 23일 개정 (5 조(일백만주로))
7. 1972년 4월 19일 개정 (5 조(일백사십만주로))
8. 1972년 10월 26일 개정 (5 조(이백만주로))
9. 1973년 7월 3일 개정 (3 조(지점설치))
10. 1974년 6월 18일 개정 (5 조(삼백이십만주로))
11. 1974년 12월 26일 개정 (5 조(삼백팔십만삼천삼백육십육주로))
12. 1976년 8월 14일 개정 (1 조(상호 영문표기 수정))
13. 1977년 2월 25일 개정 (3 조(지점 폐지))
14. 1977년 8월 12일 개정 (29 조(영업년도 변경))
15. 1978년 7월 7일 개정 (5 조(수권자본의 증액))
16. 1979년 2월 27일 개정 (3 조, 6 조, 14 조, 23 조, 25 조, 30 조 변경 및 일부 추가)
17. 1981년 12월 15일 개정 (5 조(일천만주로))
18. 1983년 12월 1일 개정 (5 조(수권자본의 증액:이천만주로))
19. 1985년 2월 14일 개정 (개정상법에 따른 개정)
20. 1986년 2월 28일 개정 (5 조, 6 조, 11 조, 12 조, 13 조, 15 조, 16 조 일부 개정)
21. 1988년 2월 27일 개정 (2 조, 15 조, 16 조, 40 조, 42 조 일부 개정)
22. 1989년 2월 28일 개정 (2 조, 7 조, 15 조, 16 조 일부 개정)
23. 1990년 2월 28일 개정 (2 조, 5 조, 7 조, 9 조, 15 조, 16 조 일부 개정)
24. 1992년 2월 28일 개정 (2 조, 9 조, 10 조, 15 조, 16 조 일부 개정)
25. 1993년 2월 27일 개정 (2 조(17,18,19 호 추가))
26. 1995년 2월 24일 개정 (5 조, 7 조의 2, 15 조, 16 조 일부 개정)
27. 1996년 2월 27일 개정 (9 조의 2, 12 조, 13 조, 24 조, 25 조, 27 조, 28 조, 31 조의 2, 32 조, 35 조, 36 조 일부 개정)
28. 1997년 2월 27일 개정 (2 조, 7 조의 2 일부 개정)

29. 1999년 3월 20일 개정 (5조, 7조의 2, 9조, 14조, 15조, 26조, 27조, 28조 변경 및 일부 추가)
30. 2000년 3월 18일 개정 (제 7조의 2, 제 9조, 제 9조의 3, 제 26조, 제 27조, 제 28조, 제 29조, 제 31조, 제 31조의 2, 제 32조, 제 33조, 제 34조, 제 36조, 제 36조의 2, 제 37조, 제 38조의 2, 제 38조의 3, 제 38조의 4, 제 38조의 5, 제 38조의 6, 제 40조 변경 및 일부 추가)
31. 2001년 3월 16일 개정 (제 1조, 제 7조의 2, 제 9조, 제 9조의 2, 제 9조의 3, 제 15조, 제 16조, 제 18조, 제 26조, 제 38조의 2, 제 41조, 제 41조의 2, 제 42조 변경 및 일부 추가)
32. 2002년 3월 15일 개정 (제 2조, 제 9조의 3, 제 15조, 제 16조, 제 27조, 제 38조의 3 변경 및 일부 추가)
33. 2005년 3월 4일 개정 (제 2조 변경 및 일부 추가)
34. 2006년 3월 3일 개정 (제 2조 변경 및 일부 추가)
35. 2008년 2월 29일 개정 (제 2조 변경 및 일부 추가)
36. 2009년 3월 6일 개정 (제 2조, 제 9조, 제 9조의 3, 제 9조의 4, 제 18조, 제 38조의 2, 제 41조의 2 변경 및 일부 추가)
37. 2010년 3월 5일 개정 (제 2조 변경 및 일부 추가)
38. 2011년 3월 18일 개정 (제 2조, 제 42조 변경 및 일부 추가)
39. 2012년 3월 2일 개정 (제 2조, 제 9조, 제 15조, 제 18조, 제 34조, 제 38조의 3, 제 40조, 제 41조의 2, 제 42조, 제 42조의 2 변경 및 일부 추가)
40. 2014년 3월 14일 개정 (제 1조, 제 4조, 제 9조, 제 9조의 3, 제 9조의 4, 제 15조의 2, 제 16조, 제 18조, 제 36조의 2, 제 38조의 5 변경)
41. 2017년 3월 10일 개정 (제 2조 35, 36 신설 기존 35는 37로 변경)